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아파트는 해지 2건, 불법행위재공급 2건을 각각 2026년 01월 23일 모집공고합니다.
아래표 빨간색 테두리에 내용을 확인하시어 청약일정 및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청약부탁드립니다.

순번	구분	타입	동호수	특공/일반	공급사유	재분양 추가비용	발코니확장여부	옵션여부	청약신청일	서류/계약일
1	무순위2차	73B	119-503	일반공급	해지	X	O	X	26.01.28.(수)	26.02.05.(목)/ 26.02.09.(월)
2	무순위2차	39	129-211	일반공급	해지	X	X (발코니확장 없음)	X	26.01.28.(수)	26.02.05.(목)/ 26.02.09.(월)
3	불법행위 재공급	84A	112-1305	일반공급	주택법위반	X	O	X	26.01.29.(목)	26.02.05.(목)/ 26.02.09.(월)
4	불법행위 재공급	73A	123-804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법위반	X	O	3연동 중문	26.01.28.(수)	26.02.05.(목)/ 26.02.09.(월)

■ 견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금회 청약 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청약 시 유의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2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1)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2)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외국인 제외]
※ 계약 전 단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공급 세대는 2023년 7월 준공 완료된 세대로 금회 공급대상 세대(불법행위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어, 발코니확장의 변경(취소)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옵션 일체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으로 입주 시까지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대금을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 모집공고로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2023.07.28.)이며 최초입주일은(2023.07.31.)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유의 사항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에 적용한 중도금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6.18.)를 준용하오니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5459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투기과열지구	수원특례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0.07.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1.23.(금)	26.01.28.(수)	26.01.29.(목)	26.02.03.(화)	26.02.05.(목)	26.02.09.(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 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6.01.23.(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61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6.18.(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712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특례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28.(수)	26.01.29.(목)	26.02.03.(화)	26.02.05.(목)	26.02.09.(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분양사무실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층 302호(인계동,대륜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수원특례시 팔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후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입인지가격 15만원)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2020.07.08.)로부터 3년간 적용되고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되어 해당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특례시청 도시정비과**-1305호(2026.01.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73

■ **공급규모** : **지하 4층, 지상 25층 30개동 총 3,432세대[조합 1,007세대, 임대주택 241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 일반공급 2,165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 [특별공급 1세대(기관추천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계		
2025930061	01	073.9700A	73A	73.9700	26.6900	100.6600	57.0300	157.6900	40.9300	1	1	1	-	123동 804호
	02	084.9900A	84A	84.9900	27.1200	112.1100	65.5300	177.6400	45.5900	1	-	-	1	112동 1305호
	합 계									2	1	1	1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3A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경기도)	1	1
합 계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천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동 호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재분양비	계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073.9700A	73A	123동 804호	218,400	341,600	-	560,000	56,000	504,000
084.9900A	84A	112동 1305호	258,180	403,820	-	662,000	66,200	595,8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 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표기이며, 상기 세대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통하여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공급규칙 제47조제3항에 의거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공급금액은 상기 기재된 금액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 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션) 세부 내역,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천원/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 호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73A	123동 804호	발코니확장	발코니확장	15,700	16,760	1,676	15,084
		현관 중문	원슬라이딩	1,060			
84A	112동 1305호	발코니확장	발코니확장	20,200	20,200	2,020	18,180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금 , 잔금	신한은행	100-036-205669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공급금액 납부계좌,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동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23동 804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23-0804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해당 세대 동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9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 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
- 잔금은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2026.04.09.(목)까지 완납하셔야 하며 그 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6.04.09.(목) 이후에는 미납 잔금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하며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계약, 추가선택폼묵(유상옵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연체료율 및 위약금은 아파트 공급 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유상옵션 계약서의 해당 사항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폼묵(유상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옵션 품목의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침실 표기는 최초 분양 카탈로그 기준입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납부 기일은 최대 계약 후 60일까지 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열쇠수령일)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03.(화) ~ 2026.02.1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0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정	계약장소
서류 제출 일정	2026.02.05.(목), 1일간, 10:00 ~ 14:00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층 302호(인계동,대륜빌딩)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계약체결 서류제출 안내

· 모든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 및 제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이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청약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용 ※ 온라인 발급용 전자인감증명서 제출 시 제출처는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로 기재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하여 제출)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기관추천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일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 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주택가격확인서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당첨자/대리인	■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일시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2.09.(월), 1일간, 10:00 ~ 14:00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층 302호(인계동,대륜빌딩)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핸드폰 이체 화면 캡쳐본 ※계약장소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O		인지세 납부 증명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정부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장소에 비치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일치해야함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계약장소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O		위임장		■ 계약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모든 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과세 금액에 대해 균등 부담할 예정이며, 분양계약자는 공 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 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20.06.18.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 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 예정이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 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1개소), 경비실(5개소/근생포함), 시니어클럽(2개소), 주민공동시설(독서실 2개소(남/여 구분 각 2개실),북카페(스터디룸 포함) 2개소, 키즈&맘스카페 2개소, 주민회의실 4개소 등), 주민운동시설(다목적체육관 1개소, 피트니스/GX클럽(런닝머신 및 웨이트 운동기구 포함) 2개소, 골프클럽(연습타석 및 퍼팅연습장, 스크린골프 2개실 포함), 패밀리룸(탁구장) 2개소 등), 어린이집(2개소), 작은도서관(2개소), 어린이놀이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소방감리
회사명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이지건축	세종종합기술(주)
감리금액	7,608,560,000	1,219,839,090	1,870,000,000

※ 감리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임.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시공회사
상호명	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68번길 1, 3층 302호 (인계동, 대륜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35871-0007273	110111-6740008	110111-0002694

■ 분양관련 문의 및 사무실 위치 안내

-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층 302호(인계동,대륜빌딩)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문의 : **☎1551-5459**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도

■ 평면

■ 마감자재리스트(73A)

※ 해당 마감재 리스트는 착공 당시 기준으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창호 & 하드웨어						
침실	목재도어	기본	표면마감 PVC시트	현대 L&C	PFHA2T	
침실	도어락	기본	-	동성산업	TP147 모닝	
가구						
현관	신발장	기본	표면마감 도장	-	지정색상 도장	
침실#1 (안방)	화장대	기본	표면마감 도장	-	지정색상 도장	
침실#1 드레스룸	선반	기본	표면마감 PVC시트	현대 L&C	PFHA2T	
아동방	붙박이장	기본 1개소	표면마감 도장	-	지정색상 도장	
주방	상부장	기본	표면마감 PET시트	현대 L&C	IVO75MT	
주방	하부장	기본	표면마감 LPM	-	SYL625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주방	키큰장	발코니 확장시	표면마감 PET시트	현대 L&C	IVO75MT	
주방	씽크볼	기본	-	천일	DJUS950	
욕실	욕실장	기본	-	본공사입찰	은경도어	
가전 & 기기						
주방	가스쿡탑	기본	-	SK매직	GRA-B420	
주방	렌지후드	기본	-	SK매직	RHD-1361MB	
주방	음식물 탈수기	기본	-	제이씨 트랜드	B7	
발코니	전동빨래 건조대	발코니 확장시	-	씨넷	INUS-ED700	
타일 & 석재						
현관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BOAT-A TWO (600X600)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현관	디딤판 & 걸레받이	기본	천연석	-	지정 천연석	
거실	아트월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BON WHITE (600X1200)	
주방	상판	기본	인조석	KCC	KSQ-803 임페리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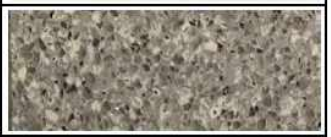
주방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BASAL LG (300X600)	
침실#1 (안방)	화장대 상판	기본	천연석	-	지정 천연석	
욕실#1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FDE 107-4 (300X300)	
욕실#1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CREAT GRIGIO (300X600)	
욕실#2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FDE 107-4 (300X300)	
욕실#2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RIVERSTONE W (300X600)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다용도실	바닥	기본	타일	동서타일	NDD 8454 (200X200)	
발코니	바닥	기본	타일	동서타일	FIN 6474 (200X400)	
도배지						
공통	천장	기본	천장지	에덴바이오	2851	
거실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33-4	
침실#1 (안방)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43	
드레스룸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48	
침실#2,3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8	
설비기기						
주방	씽크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3415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욕실#1	비데일체형 양변기	기본	-	보보	TCB-080S	
욕실#2	비데일체형 양변기	기본	-	보보	TCB-9100G1	
욕실	세면기	기본	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랫 라운드	
욕실	욕조	기본	세라믹	본공사입찰	HDC세라믹욕조	
욕실	세면기 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6110	
욕실	욕조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6106	
욕실	레인샤워 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3757AW	
욕실#1	휴지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MD915-2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A, 73B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욕실#2	스피커폰 일체형 휴지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SR 918-3	
욕실	수건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SR1501	
욕실	수건선반 (욕조설치시)	기본	-	진명홈바스	MD 1507-1	
욕실	코너선반 (샤워설치시)	기본	-	진명홈바스	MD415	
기타						
공통	바닥	기본	강마루	본공사입찰	그레이오크 색상&패턴기준	
공통	몰딩	기본	PVC	본공사입찰	표면마감 지정 PVC시트	
욕실	천장	기본	-	본공사입찰	지정 ABS판넬	
공통	걸레받이	기본	PVC	본공사 입찰	표면마감 지정 PVC시트	
발코니 다용도실	벽, 천장	기본	도장	-	지정 색상기준 (일부 포인트 색상 적용)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리스트(84A)

※ 해당 마감재 리스트는 착공 당시 기준으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창호 & 하드웨어						
침실	목재도어	기본	표면마감 PVC시트	현대 L&C	PFHA3T	
침실	도어락	기본	-	동성산업	TP147 모닝	
가구						
현관	신발장	기본	표면마감 도장	-	지정색상 도장	
침실#1 (안방)	화장대	기본	표면마감 PVC시트	현대 L&C	PFHA3T	
침실#1 드레스룸	선반	기본	표면마감 PVC시트	현대 L&C	PFHA3T	
아동방	붙박이장	기본 1개소	표면마감 도장	-	지정색상 도장	
주방	상부장	기본	표면마감 PET시트	한솔	HT7916	
주방	하부장	기본	표면마감 LPM	-	SM8324H DP3	
주방	키큰장	발코니 확장시	표면마감 LPM	-	SM8324H DP3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주방	씽크볼	기본	-	천일	DJUS950	
욕실	욕실장	기본	-	본공사입찰	은경도어	
가전 & 기기						
주방	가스쿡탑	기본	-	SK매직	GRA-B420	
주방	렌지후드	기본	-	SK매직	RHD-1361MB	
주방	음식물 탈수기	기본	-	제이씨 트랜드	B7	
발코니	전동빨래 건조대	발코니 확장시	-	씨넷	INUS-ED700	
타일 & 석재						
현관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AMIST GR (600X600)	
현관	디딤판 & 걸레받이	기본	천연석	-	지정 천연석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거실	아트월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BON WHITE (600X1200)	
주방	상판	기본	인조석	KCC	KSQ-803 임페리얼	
주방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BASAL LG (300X600)	
침실#1 (안방)	화장대 상판	기본	천연석	-	지정 천연석	
욕실#1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HLD-587F7152 (300X300)	
욕실#1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OHEL GREY (300X600))	
욕실#2	바닥	기본	타일	리빙라인	IR HLD-587F7152 (300X300)	
욕실#2	벽	기본	타일	리빙라인	DORF GREY (300X600)	
다용도실	바닥	기본	타일	동서타일	NDD 8454 (200X200)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발코니	바닥	기본	타일	동서타일	FIN 2474 (200X400)	
도배지						
공통	천장	기본	천장지	에덴바이오	2851	
거실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13	
침실#1 (안방)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18	
드레스룸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48	
침실#2,3	벽	기본	도배지	에덴바이오	6402	
설비기기						
주방	씽크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3415	
욕실#1	비데일체형 양변기	기본	-	보보	TCB-080S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욕실#2	비데일체형 양변기	기본	-	보보	TCB-9100G1	
욕실	세면기	기본	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랫 라운드	
욕실	욕조	기본	세라믹	본공사입찰	HDC세라믹욕조	
욕실	세면기 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6110	
욕실	욕조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6106	
욕실	레인샤워 수전	기본	-	워터웍스 유진	YJ3757AW	
욕실#1	휴지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MD915-2	
욕실#2	스피커폰 일체형 휴지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SR 918-3	
욕실	수건걸이	기본	-	진명홈바스	SR1501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A			성능 및 재질 (표면마감)	업체명	제품명	제품사진
실명	적용부위	분류				
욕실	수건선반 (욕조설치시)	기본	-	진명홈바스	MD 1507-1	
욕실	코너선반 (샤워설치시)	기본	-	진명홈바스	MD415	
기타						
공통	바닥	기본	강마루	본공사입찰	그레이오크 색상&패턴기준	
공통	몰딩	기본	PVC	본공사입찰	표면마감 지정 PVC시트	
욕실	천장	기본	-	본공사입찰	지정 ABS판넬	
공통	걸레받이	기본	PVC	본공사 입찰	표면마감 지정 PVC시트	
발코니 다용도실	벽, 천장	기본	도장	-	지정 색상기준 (일부 포인트 색상 적용)	

※ 본공사시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